

도민이 체감하는 생활 불편해소 지원

전북도, '정읍시 공유토지 지적재조사 사업' 등 6건 전국 우수사례 선정… 적극적인 규제혁신으로 도민 생활 속 변화 체감 기대

전북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전년도 4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선으로 혁신사례로, '재산권 행사 어려운 공유(지분)토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해결, 등 6건이 선정됐다.

도는 ▲재산권 행사 어려운 공유(지분)토지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해결(정읍시), ▲지폐예방교육 안방시대 활짝, 치매 국가책임제 앞당긴다(남원시), ▲소도시 남원형 공공배달앱 '월매요' 구축 운영(남원시), ▲안전형 도로교통 표지판 제작 설치(무주군), ▲전화출입명

부도입·지원으로 방역안전망 강화(무주군). ▲사람지의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무주군) 사례가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정읍시에서 추진한 '재산권 행사 어려운 공유(지분)토지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해결' 사례는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돼 언론 및 카드뉴스 등을 통해 전국에 공유·확산 될 예정이다.

정읍시는 토지 개발 또는 인·허가시 토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공유토지에 대해 소유유형

및 실제 점유현황 등 지적재조사 사업실시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적극적 해석·적용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 관련법 저촉 등으로 토지분할이 불가능했던 공유토지를 개인 지분에 따라 토지 분할해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각종 분쟁발생 가능성은 사전에 예방했다.

도는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지방구제신고센터 운영과 민·관 협업체계 구

축으로 규제혁신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으며, 공무원의 규제개선에 대한 교육·컨설팅 등을 통해 역량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다.

홍길순 도 규제개혁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도민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공무원의 적극행정은 일상 회복을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군과 함께 적극적인 규제혁신으로 도민의 생활 불편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제20대 대선, 거소·선상투표… 9일부터 13일까지 신고해야

거소·선상투표신고서는 13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자치체에 도착해야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하려면 9일까지 전입신고 마쳐야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9일부터 13일까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학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이다.

또한,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 중인 선원도 같은 기간 중 선상투표 신고를 하면, 선박에 설치된 팩스밀리로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해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같은 기간 인터넷·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2월 9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선

신고 가능)를 하면,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 등에 격리 중인 경우에도 모두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원양어업 및 외항 여객·화물운송사업 선박, ▲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도 선상투표신고를 하면 투표할 수 있다.

승선 중인 선원은 선박에 설치된 팩스밀리(전자팩스밀리 포함)로, 승선 예정인 선원은 우편 발송 또는 직접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되,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2월 13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등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중앙선관위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도 있다.

한편,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거소투표신고기간 만료 전에 거소투표신고(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선거공보를 발송해달라고 인터넷·모바일(<https://apply.nec.go.kr>)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2월 21일부터 후보자의 책자형 선거공보 등을 '정책·공약 미단(<https://policy.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에는 2월 9일까지 전입신고(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한 전입신고의 경우에도 동일)를 마쳐야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사전투표일인 3월 4일과 5일은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대리 투표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접수된 거소투표 신고서를 전수 조사해 허위 신고 등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현지 확인·조사 후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과 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해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후보자의 선거공

보를 받아 볼 수 있는 선거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은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 시설임이 확인되면 신속히 지급하고 있다"며 "방역의 최일선에서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일상회복을 위해 끊임없이 방역당국에 협조한 행정명령 이행시설에 대해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덜어 드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주를 우수의 중심지로"

김윤덕 의원, 2023년 우수 아·태마스터대회 적극지원 약속



개최하는 시장배 생활체육우수대회와 2023년 우수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견의했다. 김윤덕 의원은 "전북의 우수인들이 전북에서 활동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특히 2023년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장소 및 대회 준비 예산을 수시로 청취해 성공 개최를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유호상 기자

"초중고 교과교사 감축 규정 철회하라"

전북교총, 교원정원 감축 반대

행정안전부가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초중고 교과교사 정원을 108명(초등 216명, 중등 88명) 줄이는 교원 정원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4~7일, 사흘간 짧은 입법예고까지 마쳤다.

이에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기종)는 "전국 행정부에 공식 입장장을 전달하고 '학생수 감소를 열악한 교실 환경의 회복적 개선 계기로 삼자는 교육계의 요구를 철저히 의면한 처사"라며 "행안부는 교원 정원 규정 개정인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현재 전국에는 28명 이상 과밀학급이 4만개에 달하고 이 때문에 김영현 예방을 위한 교실 내 거리 두기 조치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행인부의 처사는 열악한 교실 환경 개선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정은성 기자

정읍 육계농장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전북도는 정읍시 소재 육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의심축 확인 즉시 초동대응팀이 현장에 투입돼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추가 확산방지를 위해 반경 10km 내 방역 지역 가금농가(63호)의 이동제한, 소독 강화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편, 육계농장에 사육중인 육용오리 5만1,000마리를 고병원성 확진 전 의심축 확인 즉시 예방적 살처분을 완료했다.

전북도는 "모든 가금농가는 매일 농장 내·외부 소독을 철저히 하고 사육 가축을 면밀히 관찰해 의심 가축이 발생되면 즉시 방역당국(☎ 1588-4080)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재난지원금… 28일까지 신청

1개소당 현금 80만원 지급

전북도는 지난 1월 17일부터 행정명령 이행시설 6만여개소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1개소당 8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번 지원금은 20년 5월 1일

부터 22년 1월 18일 기간까지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이행한 시설에게 지급하며, 세부대상은 통증페이지에 공고한 바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28일까지로 반드시 기간내 신청해야 하며, 시설주가 신청서 작성과 기본 필수 서류인 신

분증, 사업자등록증, 행정청의 인허가증, 통장사본을 접수하면 된다.

신청접수 방법은 시군 여전에 따르며 전주시·군산시는 온라인(홈페이지 베너), 익산시는 시청에서, 그 외 시군은 시군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은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 시설임이 확인되면 신속히 지급하고 있다"며 "방역의 최일선에서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일상회복을 위해 끊임없이 방역당국에 협조한 행정명령 이행시설에 대해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덜어 드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